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73호)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91호)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01호)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92호)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14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8
1.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 배경	8
2.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	9
3. 조문별 검토의견	12
가. 산불 진화의 주체를 소방청 등으로 변경(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12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 확대(이훈기의원안)	45
다. 산불 진화 협조 요청기관에 해양경찰관서 포함(이만희의원안) ·	48
라. 산림재난방지 교육 대상자 확대 등(임종득의원안)	53

I . 제안경위

1. 차규근의원안(2212373)

가.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8. 26.

다. 회 부 일 : 2025. 8. 27.

2. 이만희의원안(2213091)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9. 18.

다. 회 부 일 : 2025. 9. 19.

3. 정춘생의원안(2213101)

가.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9. 18.

다. 회 부 일 : 2025. 9. 19.

4. 이훈기의원안(2213192)

가.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9. 23.

다. 회 부 일 : 2025. 9. 24.

5. 임종득의원안(2213314)

가.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9. 26.

다. 회 부 일 : 2025. 9.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차규근의원안(2212373)

제안이유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경남·울산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여 극심한 인명 피해와 주택·시설 피해를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피해 확산의 원인에는 실화와 더불어 산불 대응 체계의 문제 등 인재적 요인들도 지적되고 있음.

현행 「산림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산불 예방부터 진화·복구까지의 전 과정을 산림청이 주관하도록 하고 소방청은 지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불의 규모나 발생 지역에 따라 지휘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산림청장 등으로 달라지고, 실제 산불 현장에서는 다수 기관이 복수적으로 관여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은 화재 진압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휘체계가 일관되지 않아 기관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산불 진화 실무는 소방이 대부분 수행하고 있음에도, 주관기관이 달라 장비·인력의 중복과 예산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불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예방 및 복구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진화는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불진화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산불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

나. 산불의 보호 대상으로 기존의 토지 외에도 건물도 포함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

다.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시 산불진화기관에 대하여 산림재난방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시 통보 대상에 소방청장 및 산불진화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

난방지법 제 7조).

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 및 공동활용 대상을 산불진화기관까지 확대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

마. 산림청장이 구성·운영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업무 중 산림재난 발생 시에는 초동조치만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2조).

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산림재난대응단의 업무에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산불진화기관의 장이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진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3조 및 제37조).

사. 산림청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불의 예방·조사,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등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 제48조 및 제55조 등).

아. 산불 신고 접수 기관에 산불진화기관을 추가하고, 산불 발생 신고 접수 시 산불진화기관이 진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

자. 산림청장의 산불대응 단계 발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차. 산림청장·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을 삭제하고 산불 진화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소방청 등에서 대응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4조에서 제36조까지).

2. 이만희의원안(2213091)

현행법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에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울산·경남·경북 산불 사태에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거나 해안가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이 전소되는 등 산불이 해안으로 번져 수산업 피해가 발생함. 그로 인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불이 해안가로 번졌을 때 신속한 진화를 통해 해안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3. 정춘생의원안(2213101)

현행법은 산불의 예방·대비·대응 및 피해 복구 주무기관을 산림

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에게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관서에 소방 지원 활동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불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중복되고 그로 인해 산불 진화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의 예방 및 복구 주무기관은 산림청으로 하고,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4. 이훈기의원안(2213192)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산림재난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대규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5. 임종득의원안(2213314)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산림청장이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산림재난방지 교육이나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 산림재난 대응 역량이 낮고 그로 인해 막심한 산림재난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과 같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 배경

「산림재난방지법」(법률 제20751호)은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관리체제를 통합하고 단일 법체계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산림보호법」에서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내용을 분리·이관하고,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및 지침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산림재난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 관리 정책의 종합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최근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 개발로 산림재난이 확대되고, 산림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인근 산림 및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피해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나,¹⁾

재난에 관한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림분야의

1) 2023년 말 기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각각 4,992ha, 459ha, 107만 그루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1.2배, 1.8배 및 1.1배 증가

【산림재난 발생 현황】

산불 피해면적		산사태 피해면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10년평균	'23년	10년평균	'23년	10년평균	'23년
4,004ha	4,992ha	258ha	459ha	96만그루	107만그루

「산림보호법」으로는 복잡 다기화되는 산림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²⁾

2.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전인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역대 최대 규모³⁾의 산림피해(103,876ha)와 183명의 인명피해, 1조 818억원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였음.

【 ‘25. 3. 21. ~ 3. 30. 기간 산불 발생 현황 】

구분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경북 안동	경북 영덕	경북 영양	경북 청송	울산 울주 온양	울산 울주 언양
산불발생	3.21(금) 15:28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2:12	3.25(화) 11:55
주불진화	3.30.(일) 13:00	3.28.(금) 17:00	3.28.(금) 17:00	3.28.(금) 17:00	3.28.(금) 17:00	3.28.(금) 17:00	3.27.(목) 20:40	3.26.(수) 08:10
산불대응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2단계
산불영향구역	1,858ha	12,821ha	9,896ha	8,050ha	5,070ha	9,320ha	931ha	63ha
산림피해면적	3,397ha	28,853ha	26,709ha	16,208ha	6,864ha	20,655ha	1,117ha	73ha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3.21.~30.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 2025. 5.

2) 「산림보호법」은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 외에도 산림보호 및 보호구역 지정·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입산통제구역 등 산림보호와 관련된 사항, 나무의사, 나무병원 등 수목진료제도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산림재난의 예방·대응사항을 충분히 담아내기에 미흡한 상황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산림재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1986년 산불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를 기준으로 함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주요 특징 】

❖ 산불 피해규모(198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 산불 규모 역대 1위: 총 103,876ha → (역대 2위) '00년 동해안 산불 23,794ha
- 단일 사군 산불 면적 역대 최대 의성 28,853ha → (중전) '22년 동해안 산불 올진 14,140ha
- 피해액/복구비 역대 최대 1조 818/1조 8,809억원 → (중전) '22년 동해안 산불 2,261/4,170억원

❖ 재난사태 선포 : 산불 4번째

- 1차) '05년 양양 산불, 2차) '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3차) '19년 강원 산불, 4차) '22년 동해안 산불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산불 6번째

- 1차) '00년 산불, 2차) '05년 양양 산불, 3차) '19년 강원 산불,
4차) '22년 동해안 산불, 5차) '23년 4월 산불

'19년 / '22년 / '25년 산불피해규모 비교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3.21.~30.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 2025. 5.

【 피해 현황 】

※ 특별재난지역 선포 8개 시·군 대상

❖ 인명피해

- 183명(사망 27, 부상 156) ※ 공무원 1, 진화대원 3 미포함

❖ 재산피해

- 1조 818억원(사유시설 5,175, 공공시설 5,643)
 - (사유시설) 주택 3,848동, 농·수산시설 6,106건, 농·산림작물 3,419ha 등
 - (공공시설) 산림 약 104천ha, 국가유산 등 공공시설 769건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3.21.~30.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 2025. 5.

이에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5건의 동 개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참고로, 현재까지 총 31건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3. 조문별 검토의견

가. 산불 진화의 주체를 소방청 등으로 변경(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이하 ‘시행예정법률’)은 산불을 포함한 산림재난방지의 주체를 산림청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산림재난방지 중 산불 진화에 관한 주체를 소방청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차규근의원안 제2조·제4조·제7조·제11조~제13조·제16조·제31조·제32조·제34조~제37조·제48조·제55조·제56조·제67조, 정춘생의원안 제30조~제35조·제37조).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0. ----- ----- ----- -----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을 말한다. <단서 신설> <신설> 11. ~ 14. (생략)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불에 관한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 ----- ----- 다만, 산불진화는 제10호의2에 따른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한다. 10의2. “산불진화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을 말한다. 11. ~ 14.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 범위) ----- ----- ----- -----. 1. ----- ----- ----- ----- ----- -----토지 및 건물-----	제4조(적용 범위) (현행과 같음)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 ----- ----- ----- ----- ----- -----.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산불진화기관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관련 정보 제공, 시설·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② ----- -----소방 청장,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u>산림청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① · ② (생략) ③ 산림청장은 제1항	<u>도지사</u>-----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산림청장, 소방청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및 <u>산불진화기관의 장에게</u>-----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각 호에 따른 정보를 <u>산림재난방지기관</u>의 장에게 제공하여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u>산림재난방지기관</u>의 장은 이를 산림재난방지 등에 이용·활용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2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 발생 시 <u>초동 조치</u> 및 <u>지휘</u>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u>산림재난방지기관</u>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u>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u>	----- <u>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불진화기관</u>----- ----- <u>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불진화기관</u>----- -----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① ----- ----- ----- -----<u>초동 조치</u>----- -----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 ----- ----- ----- ---<u>경우</u>----- ----- -----	제12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현행과 같음)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수진화대,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생략)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대비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u>산불방지에 필요한</u>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산림청장</u>	----- ----- ----- ----- ----- ----- -----.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예방 체계----- ----- ----- ----- <u>따라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u>----- -----. ③ ----- ----- ----- -----필요한----- ----- ----- ----- --. <후단 삭제>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u>산림청장</u>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이 조에서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1조(산불 신고) ①	④ ----- ----- -----<u>산</u> <u>불 발생에 대비하여-</u> ----- -----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산불 신고) ①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u>소방청장 또는 산림청장</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산불 신고) ①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u>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u> 또는 <u>산림재난방지구관</u>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u>산림청</u> 또는 <u>산림재난방지구관</u>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u>산림재난방지기관</u>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신고를 받은 관할 <u>산림재난방지기관</u>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산불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제32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① <u>산림청장</u>은	----- ----- ----- -----<u>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산불진화기관</u>----- ----- -----. ② <u>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u>----- ----- ----- -----<u>산불진화기관</u>----- -----. ③ ----- ----- -----<u>산불진화기관</u>----- -----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삭 제>	----- ----- ----- -----<u>소방청,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u>----- ----- -----. ② <u>소방청, 산림청</u>----- ----- ----- -----<u>산림재난방지기관</u>-----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대통령령</u>----- -----. 제32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① <u>소방청장</u>-----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이하 이조에서 “산불진화자원”이라 한다)의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발령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②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소방청장----- -----.
③ 제1항에 따른 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산불진화자원의	<삭 제>	③ -----

[illegible]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제34조(산불 진화) 산불 진화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다.	----- ----- ----- -----. 제34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립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산립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③ ----- ----- ----- ----- ----- ----- -----소방청장----- -----. ----- 소방청장----- ----- -----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위임할 수 있다. ④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u>산림청장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할 수 있다.</u>		----- -----. ④ ----- ----- ----- ----- ----- ----- <u>소방청장</u>----- ----- -----.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제34조에 따라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u>산림청장</u> 또는 <u>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u>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삭 제>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① ----- ----- -----<u>소방청장</u> ----- ----- ----- ----- ----- ----- -----.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림재난 방지기관의 장인 경우를 말한다)은 산불 발생·진화·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 ----- ----- ----- ----- ----- -----소방청장----- -----.
④ 산림청장은 대형산불이 발생하였거나 대형 산불로 확산이 우려되는 산불(지방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u>자치단체의 장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인 경우를 말한다)</u> <u>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제36조(협조) ① <u>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u>	<삭 제> 제36조(협조) ① <u>산불진화기관의 장</u>----- ----- ----- ----- ----- -----	⑤ ----- ----- ----- ----- ----- <u>대통령령</u>----- -----. 제36조(협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한정한다) 2. ~ 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사람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방법·절차·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① <u>산림</u>	----- ----- ----- ----- -----. 1. <u>산림재난방지기관</u> 2. ~ 7. (현행과 같음) ② ----- ----- ----<u>산불진화기관</u>의 <u>장</u>----- ----- -----. ③ -----<u>산불진화기관</u>의 <u>장</u>----- ----- ----- ----- ----- -----.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① <u>산불</u>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① <u>소방</u>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u>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1. 2. (생략) 3. <u>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 보좌</u> 4. (생략) 5. <u>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u> ② <u>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u>	<u>진화기관의 장은 산불진화단-----</u>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산불현장에서의 산불진화기관의 장에 대한-----</u> 4. (현행과 같음) 5. -----<u>진화</u>----- ----- ----- ② <u>산불진화기관의 장은-----</u> ----- ----- ----- ----- ----- -----	<u>청장,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u> ----- ----- 1. ~ 5. (현행과 같음) ② <u>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u> -----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 다.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 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 피해가 발생 한 산림에 대하여 산 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 등에 대한 질 문, 현장 확인, 실험, 대응 분석·평가 등 (이하 “산불 조사”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8조(산불 조사) ① ----- ----- ----- ----- ----- ----- ----- ----- ----- ----- ----- ----- ----- ----- ----- ---. 이 경우 「소방 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와 협 력하여야 한다.	제48조(산불 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산림항공기 운 용)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재난 방지 및 구	제55조(산림항공기 운 용) ① ----- 산불의 예방, 산림병 해충의 예찰·방제	제55조(산림항공기 운 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u>조·구호 활동 등을</u> <u>수행하기 위하여 산</u> <u>림항공기(「항공안전</u> <u>법」 제2조제1호부터</u> <u>제3호까지에 따른 항</u> <u>공기, 경량항공기, 초</u> <u>경량비행장치를 말한</u> <u>다)를 운영하여야 한</u> <u>다.</u> <u>1. 산림재난 예방·대</u> <u>비·대응·조사·복</u> <u>구</u> <u>2. 재난 또는 사고 발</u> <u>생 시 인명 구조 및</u> <u>구호 활동</u> <u>3. 산불진화훈련 또는</u> <u>헬기의 기능시험·</u> <u>이동·조종기술 훈</u> <u>련 등을 위한 비행</u> <u>4. 그 밖에 산림행정</u> <u>을 위하여 농림축산</u> <u>식품부령으로 정하</u> <u>는 사항</u> ② (생략)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생략) ② 산림청장 또는 산	<u>등 농림축산식품부령</u> <u>으로 정하는 산림사</u> <u>업을-----</u> <u>-----</u> <u>-----</u> <u>-----</u> <u>-----</u> <u>--.</u>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현행과 같 음) ② -----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 ④ (현 행과 같음)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람에게 산 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의 대원</u> 3. ~ 5. (생략) ③ . ④ (생략)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u>인명구조작업</u>으 로 사망하거나 부상 을 입은 사람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보상금 지급의 원 인이 되는 산림재난 의 발생에 직접 책임 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5. (현행과 같 음) ③ . ④ (현행과 같 음)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 ----- ----- -----<u>활동</u>----- ----- ----- ----- ----- ----- ----- -----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현행과 같음)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재난’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산불방지⁴⁾, 산사태등방지⁵⁾, 산림병해충 예찰⁶⁾ 및 방제⁷⁾를 ‘산림재난방지’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재난방지 활동 중 ‘산불 진화’ 관련 통합지휘권을 산불대응 단계에 따라서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⁸⁾.

4) 산불을 예방·대비·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

5) 산사태등(산사태 및 토석류)을 예방·대비·대응하고 산사태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

6)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

7)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

8) 「산림재난방지법」 제34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자 】

대응단계	초기대응 (10ha 미만)	확산대응		
		산불 1단계(10~50ha)	산불 2단계(50~100ha)	산불 3단계(대형산불)
지휘권자	시장·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2개 이상 시·군·구 ⇒ <u>시·도지사 지휘</u>)	<u>시·도지사</u> (1,000ha 이상 또는 2개 이상 시·도 ⇒ <u>산림청장 지휘</u>)

※ 주 : 국유림관리소장은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시행령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을 예정임

※ 자료 : 「산림재난방지법」을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최근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진화 현장에서 복잡한 지휘체계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두 개정안은 산불 진화의 주체를 소방청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불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각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

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할 수 있다.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제34조에 따라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재난방지구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구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차규근의원안 검토의견

차규근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산불 진화’와 관련된 업무는 제외하고, 산불 진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⁹⁾의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산불진화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

이에 따라 산불 규정 적용 대상 중 산림인접지역의 범위에 건물을 추가하고(안 제4조),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산림재난정보시스템 체계에 산불진화기관을 포함시키며(안 제7조·제11조), 산불 진화 관련 산림청의 권한 및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안 제12조·제13조·제16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55조·제56조·제67조), 산불 진화 업무의 주체를 산불진화기관으로 변경하고(안 제31조·제34조·제36조·제37조), 산불 조사와 화재조사를 협력하도록(안 제48조) 규정하고 있음.

【 차규근의원안 주요 개정내용 】

조항		개정내용
1	제2조(정의)	- 산불진화기관 정의(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2	제4조(적용범위)	- 산불 규정 적용 대상 중 산림인접지역의 범위에 ‘건물’ 추가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조항		개정내용
3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 기본계획에 산불진화기관에 대한 사항 추가 -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변경 시 통보 대상에 소방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장 등 포함
4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산림재난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대상 및 정보 이용·활용 의무자에 산불진화기관 추가
5	제12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 산림재난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휘 권한 삭제
6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 산림청장이 운영할 수 있는 산림재난대응단의 구성에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외
7	제16조(산불 예방 등)	- 산림청장의 산불 ‘대비’ 체계 마련 의무 삭제 - ‘산불방지’(산불 대응 포함) 관련 내용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지원에 관한 내용 삭제
8	제31조(산불 신고)	- 산불 신고 접수기관에 산불진화기관 추가 - 신고 관련 산불 진화 주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 산불진화기관으로 변경
9	제32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 산불 진화 관련 산림청장·산림재난방지기관의 역할에 관한 내용 전체 삭제 - 산불 진화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소방청 등에서 대응하도록 규정(안 제34조)
10	제34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11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12	제36조(협조)	- 산불 진화 관련 협조 요청의 권한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에서 산불진화기관으로 변경
13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 산불진화단 구성·운영의 주체를 산림청장·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서 산불진화기관의 장으로 변경
14	제48조(산불 조사)	- 산불 조사 시 화재조사와 협력
15	제55조(산림항공기 운용)	- 산림항공기 운용 용도를 산불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등에 한정
16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의 대상에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제외
17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인명구조작업에 대한 명시를 제외

※ 자료: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개정안에 따라 산불 진화 업무를 산불진화기관인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담당하게 되는 경우, 소방청으로 산불을 포함한 화재 진압에 대한 지휘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다는 점과 소방청의 화재진압 전문성이 산불 진압에 결합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금년 3월 초대형산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5년 10월 22일 정부는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바, 그 중에는 소방의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위하여 현장 도착 즉시 지휘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입산하여 진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 개정안 관련 「산불 종합대책」 주요 내용 】

□ 핵심내용 : ①가용자원 총동원, ②강력한 초동진화

구분	기존	개선
초기 대응	- 헬기 투입에 50분 내외 소요 - 산불 4단계 구분·대응 * 초기 및 1^{10ha~}.2^{50ha~}.3^{100ha~} 단계로 구분, 3단계^{1천ha}부터 산림청장 현장지휘 - 소방은 산불진화 지원 역할 * 민가 방어 중심 진화	- 헬기 투입시간 30분 이내 단축 * 산불 신고·접수시 즉시 출동 등 3단계로 축소 및 산림청장 신속 지휘 * 초기 및 1^{10ha~}.2^{100ha~} 단계, 재난성 대형 산불 우려시 단계 상관없이 산림청장 현장지휘 - 적극 초동진화 등 소방 역할 확대 * 초동진화 인력·조직·장비 확대 및 제도 정비, 단계별 동원 소방력 2배 확대
자원 동원	- 산림청·소방청 헬기 우선 활용, 군헬기는 순차적 투입 * 산림헬기 52대(소형 11, 중형 34, 대형 7) - 산불 전담 진화대, 진화차 등 운영 * 공중·특수진화대 539명, 고성능진화차 29대	- 군헬기 41대 즉응전력 편성(상시대기→즉시투입) 등 143대 군헬기 지원 * 산림진화헬기 대형 4대 추가, '25.10월 산불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전문 진화인력·장비 보강 및 민간 전문인력 진화 활용 * 공중·특수진화대 확대(539명→669명, +130), 다목적진화차 확대(+76대), 민간 산림전문인력 산불진화 투입(7,835명), 야간신속대응반 연중 운영(1,632명) 등

구분	기존	개선
지휘 체계	- 산불 발생시 중수본(산림청), 국가적 재난 우려시 중대본(행안부) 구성·운영 *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운영 - 헬기 등 자원동원은 필요시 유관 기관 별도 협의	-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중수본(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안부) 상시 운영 * 중수본에 국가산불대응상황실 운영 및 전국 진화자원 배치·조정, 현장지휘 협력관 파견(산림청→지자체) - 상시 협의회·시스템 구축, 실시간 동원 협의 *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

※ 자료: 산림청

또한, 개정안에 대해 산림청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은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바, 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 차규근의원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 】

기관	의견
산림청	- 수용 곤란 - 산불진화는 산림청, 지자체, 소방청, 군 등 전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진화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난안전법에 따라 산불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산림청으로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산불 관리의 이원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산림인접지역의 정의는 불이 산림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건물"까지 포함할 경우 법적 충돌 및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우려 - 산불상황관계시스템의 산불상황정보는 중앙부처 등 4천여 기관과 기 공유 중으로 입법의 실익이 없음

10) 관련 부처인 소방청은 차규근의원안에 대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

기관	의견
행정안전부	- 신중 검토 - 소방이 적극적인 산불진화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진화장비 및 인력 등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 - 산불의 복합재난 성격(지형, 임상, 기상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전문가와 지자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개정안은 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울산광역시	- 현재 산불규모에 따라 지자체장이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현재 마을단위로 산불감시원, 예방진화대 등 마을단위로 산불 예방·진화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가 부재한 소방청에서 산불진화 통합지휘를 하게 되면 대응에 어려움 발생
충청남도	- 산불 예방, 진화 및 복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필요. 반면, 산불 진화만을 소방청이 담당하면 정책 추진에 있어 일관성이나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음
전라북도	- 산불을 일반화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소방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방의 역할을 강화 필요
동부지방 산림청	-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따라 산림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산림재난방지법에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 산불진화는 건축물,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와는 다르게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등 그 유형 및 전개 양상 등이 일반화재와 전혀 다르므로 산불재난에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산림청 및 지자체, 유관기관이 통합하여 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부지방 산림청	- 산불은 일반화재와 달리 지형·식생·범위 등 특수성이 강해 전문 대응이 요구 - 산림청 중심 체계를 유지하되 인력·장비 보강하여 산불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합리적

※ 자료: 산림청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다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은 산림재난방지 중 산불 진화에 관한 사항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시행예정법률 내의 체계 정합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산림재난방지는 산림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가 전부 포함되는 개념이며, 개정안은 산림재난방지 중 산불에 대한 ‘대응’만을 산불진화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규정이 함께 삭제되거나, 산불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업무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음.

예컨대, 시행예정법률 제9조¹¹⁾는 산림청장이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배포 대상에 산불진화기관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또한, 개정안 제12조는 산림청장의 산림재난 지휘 권한을 전부 삭제함으로써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관련 지휘 권한도 함께 삭제하고 있음.

둘째, 산불의 단계별로 진화의 체계가 규정되어 있는 시행예정법률과

-
- 11)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이용하여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산림재난별로 실시 및 제작할 수 있다.
- ⑤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의 기준·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달리, 개정안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화재 진압과 산불의 진화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산불진화 기관의 산불 진화 체계에 대하여 기관 간 소통 및 심도 깊은 논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산림청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운용하던 산불 진화 관련 예산, 장비 및 인력 관련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춘생의원안 검토의견

정춘생의원안은 산불의 예방 및 복구 주무기관은 산림청으로 하고, 산불 진화의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하기 위하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발령 권한, 지역주민 등 대피명령·강제대피조치 요청 권한, 산불진화단의 구성·운영 권한을 소방청장에게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안 제30조·제33조·제37조), 산불 신고 접수기관에 소방청을 추가하며(안 제31조), 산림청장에게 부여하던 산불대응 단계 발령 권한과 산불 진화 통합지휘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안 제32조·제34조·제35조) 것임.

【 정춘생의원안 주요 개정내용 】

조항		개정내용
1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권자에 소방청장 추가
2	제31조(산불 신고)	- 산불 신고 접수기관에 소방청 추가
3	제32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 산불대응 단계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에서 소방청장으로 변경
4	제33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통제단장에 대한 지역주민 등 대피명령·강제대피조치 요청 권한을 소방청장에게도 부여
5	제34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 산림청장의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을 소방청장의 권한으로 변경
6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7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 산불진화단의 구성·운영 권한을 소방청장에게도 부여

※ 자료: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개정안에 따라 산불 진화 업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청장에게도 부여하는 경우, 소방청의 산불 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화재 진압의 전문성을 산불 진화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산림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바, 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12) 관련 부처인 소방청은 차규근의원안에 대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

【 정춘생의원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 】

기관	의견
산림청	- 수용 곤란 - 산불진화는 산림청, 지자체, 소방청, 군 등 전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진화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난안전법에 따라 산불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산림청으로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산불 관리의 이원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산불경보의 발령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산림청 소관이며, 소방청이 추가될 경우 법적 충돌 및 현장의 혼선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소방청은 이미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없음
농림축산 식품부	- 산불은 산림뿐만 아니라 이와 인접한 민가,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산림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 및 총력대응이 필요함 -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현행 대응 체계 및 기관별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휘체계 재편은 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자료: 산림청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다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은 기존에 산림청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발령 권한, 지역주민 등 대피명령·강제대피조치 요청 권한, 산불진화단의 구성·운영 권한 등을 소방청장에게도 중복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바,

예산 및 인력 운용을 비효율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권한의 중복에 따른 책임 회피 문제와 대피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혼란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산불 진화의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변경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어 산불 신고 접수기관에 소방청을 추가하였으나, 시행예정법률 제31조제3항¹³⁾에 따른 산불 진화 업무는 산불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이 담당하도록 유지하고 있어, 이 부분을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해 보임.

셋째, 개정안은 산림청장에게 부여하던 산불 진화 통합지휘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시행예정법률 제34조¹⁴⁾는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하는 산불을 제외한 나머지 산불에 대하여

13)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산불 신고) 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자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자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신고를 받은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산불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4) 「산림재난방지법」 제34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 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그 산불의 진화를

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장을 여전히 통합지휘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불의 확산에 따라 통합지휘권이 소관을 달리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통합지휘할 수 있다.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 확대(이훈기의원안)

개정안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연접한 토지를 포함 하도록 하려는 것임(이훈기의원안 제22조제1항).

현행	이훈기의원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을 말하며, 공유림·사유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붕괴·침식·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u>지역</u>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⑭ (생략)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① ----- ----- ----- ----- ----- ----- ----- ----- ----- ----<u>지역(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연접한 토지를 포함한다)</u>을----- -----. ② ~ ⑭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예정법률에 따르면,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붕

과·침식·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최근 극한강우의 빈도가 증가¹⁵⁾하면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집중관리 대상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024	31,345
2023	28,988
2022	27,400
2017	24,075
2012(최초)	390

※ 자료 : 산림청

그러나 최근에는 산사태취약지역 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과 그 지역의 연접한 토지까지 확대하여 대규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다만, 시행예정법률은 제4조에서 ‘산사태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15) 시간당 100mm이상 극한호우빈도 : ('20) 12회 → ('22) 15회 → ('24) 16회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어 보이고, 산림청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임.

【 관련 조문 】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불에 관한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산사태등에 관한 규정: 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제9조 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등을 거쳐 산사태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 건수 및 취약지역 내 발생현황 】

(단위 : 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피해 건수	취약 마을 지정	취약 지정	피해 건수	취약 마을 지정	취약 지정	피해 건수	취약 마을 지정	취약 지정	피해 건수	취약 마을 지정	취약 지정	피해 건수	취약 마을 지정	취약 지정
190	164	26	1,278	1,196	82	2,410	2,337	73	1,107	936	171	2,637	2,393	244

※ 주: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산사태 발생 건수(7,622건) 중 약 92%(7,026건)는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

※ 자료 : 산림청

다. 산불 진화 협조 요청기관에 해양경찰관서 포함(이만희의원안)

개정안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해양경찰관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이만희의원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이만희의원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7. (생략) ② . ③ (생략)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협조) ①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 를 포함한다)</u>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 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25일 오후 서쪽 선단지 화선으로부터 영덕 강구항까지 비화되었으며, 불티가 12시간만에 최대 51km를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고,¹⁶⁾ 그로 인해 경북 영덕에서는 어업시설, 수산물, 어망어구 및 어선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 경북 영덕 피해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경북 영덕	
		물량	피해액
계		275,188	11,596
사유시설	농·어업시설(건)	808	10,062
	수산물(마리)	274,365	1,088
	어망어구 / 어선(건)	13	93
공공시설	해수부 해양시설(건)	2	353

※ 자료 :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시행예정법률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¹⁷⁾(산림청장 또는

16) 산림청 보도자료, “지상에서 우주(드론-비행기-위성) 통합기술로 대형산불 화선 탐지”, 2025. 3. 27.

17) 「산림재난방지법」 제34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 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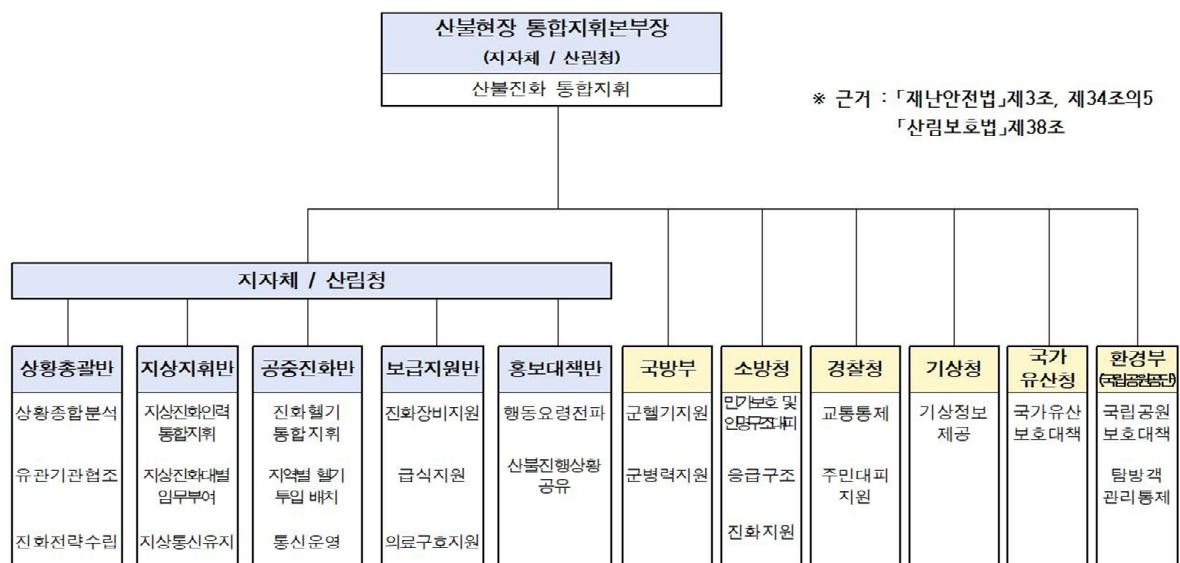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할 수 있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국가유산청, 기상청, 국립공원공단,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관서는 제외되어 있음.

【 산불현장 통합지휘 체계 】



※ 자료 : 산림청

【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자 】

대응단계	초기대응 (10ha 미만)	확산대응		
		산불 1단계(10~50ha)	산불 2단계(50~100ha)	산불 3단계(대형산불)
지휘권자	시장·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2개 이상 시·군·구 ⇨ <u>시·도지사 지휘</u>)	<u>시·도지사</u> (1,000ha 이상 또는 2개 이상 시·도 ⇨ <u>산림청장 지휘</u>)

※ 주 : 국유림관리소장은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시행령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을 예정임

※ 자료 : 「산림재난방지법」을 바탕으로 재구성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제34조에 따라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재난방지구관기관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구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소집하여 대책회의 및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해양경찰청이 포함(「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될 예정이다.¹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안) 】

제2조(정의)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5.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산림조합과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자료 : 산림청

이처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인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군부대, 국립공원공단,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 요청 기관에도 해당하고, 최근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에서도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산불 진화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8)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안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불이 해안가로 번졌을 때 신속한 진화를 통해 해안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산불 발생의 극한상황을 고려하여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협조 등 범부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해양경찰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해양경찰청도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라. 산림재난방지 교육 대상자 확대 등(임종득의원안)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등에 대하여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교육의 대상을 지역 주민까지 확대하고, 위탁 교육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임종득의원안 제56조).

현행	임종득의원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생략)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u>실시하여야</u> 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5. (생략)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정 기적으로 실시하여야-----. 1. ~ 4. (현행과 같음) 5. <u>산림재난피해지 및 그 인접 지역 주민</u> 6. <u>산불 발생 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림병해충 위험지역 주민</u>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현행	임종득의원안
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 기술공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 -----있 으며,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은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 및 산사태예방 교육 등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그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과 그 밖의 위탁기관(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치산기술협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 센터)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¹⁹⁾.

시행예정법률은 동법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의 기관에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에서 주민들의 대피가 미흡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는바²⁰⁾, 산림재난방지 교육 대상을 산림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서 지역

19) 참고자료1: 산림재난방지 교육

20) 연합뉴스, “역대급 산불 피해 왜… 기상악화·확산예측 실패·주민대피 미흡”, 2025. 4. 16.

주민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산림재난피해지 및 그 인접 지역 주민’과 ‘산불 발생 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림병해충 위험지역 주민’을 산림재난방지 교육의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산림재난방지 관련 이해도를 제고하고 산림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를 가능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 교육은 산림교육원 및 위탁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연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중이고, 개정안의 ‘지역 주민’은 시행예정법률 제56조제2항제5호의 ‘국민’에 이미 포함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위탁 교육은 민간위탁사업비 등 이미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점에서, 개정안의 ‘정기적인’ 산림재난방지교육 실시와 ‘지역 주민’의 대상자 추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²¹⁾의 입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

21) 다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6조에서도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입법례도 존재함.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1

산림재난방지 교육

【 산림교육원 】

재난별	교육명	대상	주요내용	비고
통합	산림재난안전과정	공무원	산림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등	온라인/3회
산불	산불방지업무 담당자과정	공무원	산불재난관리체계 및 매뉴얼 이해	집합/2회
산불	산불상황관제시스템운영과정	공무원	산불실무자의 산불대응 강화 등	집합/1회
산불	산불원인감식기초과정	공무원, 산불방지기술 협회	산불피해지 원인규명과 피해자 검거에 따른 과학적인 증거 수집 등	집합/2회
산불	산불원인감식심화과정	공무원, 산불방지기술 협회	산불피해지 원인규명과 피해자 검거에 따른 과학적인 증거 수집 등	집합/1회
산불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과정	산불재난특수 진화대원	산불진화능력 향상 및 조직문화 이해	집합/2회
산불	산불진화지휘자연수과정	공무원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산불 대응력 향상 등	집합/1회
산불	산불현장통합지휘자과정	공무원	산불재난대응 지휘자의 역할 등	집합/2회
산불	실무역량강화과정	공무원	산불담당자 실무중심 학습	집합/1회
산불	산불예방 및 진화과정기초	일반인	산불예방 및 진화 기초지식	집합/2회
산불	산불전문안전교육	공무원	산불예방 및 진화 기초지식	연중
산불	산불이해하기	공무원	산불의 기본 개념 습득	온라인/연중
산불	산불현장통합지휘자과정	공무원	산불재난대응 지휘자의 역할 등	온라인/연중
산불	국립공원공단 산불관리전문 교육과정(관리자)	국립공원공단	산불재난관리체계 등	집합/1회
산불	국립공원공단 산불관리전문 교육과정(실무자)	국립공원공단	산불재난관리체계 등	집합/1회
산불	국방부산불담당자직무과정	공무원	산불협력기관인 국방부의 현장관리자의 산불대응 강화 등	집합/1회
산사태	산사태대응 심화과정	공무원	산사태 담당자 실무능력	집합/1회
산사태	산사태대응 활용과정	공무원	산사태 담당자 전문지식	집합/1회
산사태	산악기상이해과정	산림청, 지자체공무원	기상자료 활용, 산악기상의 이해 등	집합/1회
산사태	실무역량강화과정	공무원	산사태담당자 실무중심 학습	
산사태	사방공학의이해	공무원	사방공학 직무	온라인/3회
병해충	실무역량강화과정	공무원	산림병해충 담당자 실무학습	집합/1회
병해충	산림병해충이해	공무원	산림병해충 이해 및 방제대책	온라인/3회
병해충	산림병해충방제 기초과정	공무원,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 등 현장 실무역량 향상	집합/1회
병해충	산림병해충방제 심화활용 과정	공무원,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 등 현장 실무역량 향상	집합/1회

【 산림재난방지 위탁교육 】

구분	과정별	대상	교육내용
한국산불방지 기술협회	산불방지전문교육	산불진화대	산불 이론 및 진화 실습
	산불방지기본교육	유관기관	산불 이론 및 진화 실습
	산불방지예방교육	일반인	산불 이론
한국치산기술 협회	산사태 현장예방단 직무교육	현장예방단	산사태 현장예방단 임무 및 역할
	찾아가는 산사태예방교육	일반인	국민의 산사태 대응 역량 제고
	대국민 산사태 교육지원	일반인	대국민 산사태 경각심 고취
소나무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전문기술교육	담당 공무원	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정책·지침
		예찰·방제단	재선충병 예찰·방제기술 실습
		방제사업자 (설계·감리)	재선충병 설계·감리 실무 및 실습
		방제사업자(시 공)	재선충병 시공 실무 및 실습
	산림병해충 관리분야 드론교육	담당 공무원	산림병해충관리분야 드론조종 실습